

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06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□ 2006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수납액 (B)	지출액		잉여금 (D)	잉여금	
			B/A (%)	(C)		C/A (%)	D/A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,680	11,419,779	148.62%	10,277,592	133.76%	1,142,187	14.86%

가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 (A)	징수결정액 (B)	수납액		미수납액 (D)	미수납액	
			B/A (%)	(C)		C/A (%)	D/A (%)
합계	7,683,680	11,683,795	152.06%	11,419,779	148.62%	264,016	3.43%
현년도	7,320,848	7,038,941		6,781,898		257,043	
전기미수금	50,000	230,876		223,903		6,973	
전기이월액	312,832	4,413,978		4,413,978		0	

나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지출액 (C)	C/B (%)		이월액 (D)	D/B (%)		불용액 (E)	E/B (%)	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,680	11,784,827	10,277,592	87.21%		775,930	6.58%		731,305	6.21%	

다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구분 계	건설개 량 이 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 조 금 집행잔액	순세계잉여금

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06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6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, 동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2006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수납액 (B)	지출액		잉여금 (D)	잉여금	
			B/A (%)	(C)		C/A (%)	D/A 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,680	11,419,779	148.62%	10,277,592	133.76%	1,142,187	14.86%

가. 세입결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 (A)	정수결정액 (B)	수납액		미수납액		
			B/A (%)	(C)	C/A (%)	(D)	D/A (%)
합계	7,683,680	11,683,795	152.06%	11,419,779	148.62%	264,016	3.43%
현년도	7,320,848	7,038,941		6,781,898		257,043	
전기미수금	50,000	230,876		223,903		6,973	
전기이월액	312,832	4,413,978		4,413,978		0	

나. 세출결산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 (A)	예산현액 (B)	지출액 (C)	이월액		불용액 (E)	E/B	
				C/B (%)	D/B (%)		(%)	(%)
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7,683,680	11,784,827	10,277,592	87.21%	775,930	6.58%	731,305	6.21%

다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 회계별	계	건설개량 이월	사고이월	계속비	보 조 금 집행잔액	순세계잉여금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“관계법령 발취 불임”

- 지방공기업법 제35조(결산)
-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

나. 기타사항

- 2006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보고서 : 불임
- 2006회계년도 평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: 불임

관계법령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35조(결산) ①관리자는 매 사업년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.

②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시행령

제36조(결산서의 제출등)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”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4.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
5.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
6. 결산부속명세서